

화성동탄2지구 C-2블록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변경 공고

2021년 5월 14일자 '청약HOME'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2B 배정세대수 문구 변경 (기 모집공고 Page.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7	4	1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4	1	10

화성동탄2지구 C-2블록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dt-siglo.co.kr>)으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견본주택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향후 당첨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손소독제 미도포,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견본주택 안내 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관람이 불가합니다.
-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분양상담 및 상담전화(1600-0255),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14.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2019.5.14.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2020.06.23.)」시행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권선구 곡반정동(화성시 반정동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함)에 계속 거주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수원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07.24.부터 1년간 “화성시” 거주자로 인정(단, 주택공급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동탄2)된 곳은 2년간 인정)하여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청약홈에서 주택공급 신청 시 화성시 거주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현장접수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t-siglo.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점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점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점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무기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제한사항은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05월 24일(월)	05월 25일(화)	05월 26일(수)	06월 01일(화)	06월 02일(수) ~ 06월 08일(화)	06월 14일(월) ~ 06월 17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자격확인 지참 방문접수 (10:00~17:00)	계약서류 지참 방문예약후 계약 (10:00~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동탄역 금강펜더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 공급계약 체결시 방문예약은 동탄역 금강펜더리움 더 시글로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 대상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청 주택과-21076호(2021.05.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블록
- 공급규모 : 지하4층, 지상38층, 3개동 공동주택(아파트 38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특별공급 210세대(일반[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36세대, 신혼부부 7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5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275	01	052.1100A	52A	52.1100	21.2400	73.3500	50.6100	123.9500	17.6037	108	11	10	23	4	15	63	45	3
		02	052.5500B	52B	52.5500	21.9600	74.5100	51.0300	125.5500	17.7524	82	7	8	14	1	12	42	40	3
		03	058.6900A	58A	58.6900	24.9900	83.6800	57.0000	140.6800	19.8267	108	11	10	23	4	15	63	45	3
		04	058.4500B	58B	58.4500	24.7900	83.2400	56.7600	140.0000	19.7455	82	7	8	14	1	12	42	40	3
	합 계											380	36	36	74	10	54	210	170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 (평형환산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 면적 및 대지비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시설별 대지비분은 공동주택(아파트)와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대지비분을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음.
- ※ 공급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 m², 원)

주택형	동별구분	세대수			공급대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총 세대수	층별 세대수	층 구분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시	2021.11.15.	2022.06.15.	2023.01.16.	2023.08.16.	2023.12.15.	2024.05.15.	입주지정일			
052.1100A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8	1	2층	144,956,000	159,044,000	304,0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30,400,000	91,200,000	
			3	3층	144,956,000	165,044,000	310,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000,000
			3	4층	144,956,000	172,044,000	317,0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95,100,000
			18	5~10층	144,956,000	182,044,000	327,0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32,700,000	98,100,000
			30	11~20층	144,956,000	189,044,000	334,0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33,400,000	100,200,000
			30	21~30층	144,956,000	196,044,000	341,0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34,100,000	102,300,000
			23	31층 이상	144,956,000	202,044,000	347,0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34,700,000	104,100,000
052.5500B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3호	82	1	2층	146,180,000	156,820,000	303,0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0,900,000	
			3	3층	146,180,000	162,820,000	309,0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30,900,000	92,700,000	
			3	4층	146,180,000	169,820,000	316,0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94,800,000	
			18	5~10층	146,180,000	179,820,000	326,0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97,800,000	
			30	11~20층	146,180,000	186,820,000	333,0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27	21층 이상	146,180,000	192,820,000	339,0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01,700,000	

058.6900A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1호	108	1	2층	163,261,000	193,739,000	357,0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3	3층	163,261,000	201,739,000	365,0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36,500,000	109,500,000
			3	4층	163,261,000	208,739,000	372,0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37,200,000	111,600,000
			18	5~10층	163,261,000	220,739,000	384,0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30	11~20층	163,261,000	228,739,000	392,0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39,200,000	117,600,000
			30	21~30층	163,261,000	236,739,000	40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23	31층 이상	163,261,000	244,739,000	408,0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058.4500B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82	1	2층	162,592,000	192,408,000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3	3층	162,592,000	200,408,000	363,0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36,300,000	108,900,000	
			3	4층	162,592,000	207,408,000	370,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18	5~10층	162,592,000	219,408,000	382,0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38,200,000	114,600,000
			30	11~20층	162,592,000	227,408,000	390,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27	21층 이상	162,592,000	235,408,000	398,0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2.1100A	052.5500B	058.6900A	058.4500B
약식표기	52A	52B	58A	58B

■ 공통유의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대금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임.
- 상기 주택형별 공급대금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정부가 출자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아파트)임.
- 상기 공급대금에는 [발코니확장 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전, 가구 등] 등의 계약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음. (단, 단지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도장공사·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예정임.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납부지역에 따른 연체일수는 지정된 날로부터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됨으로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을 원할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대출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함.(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해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층수는 건립 동,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 조정대상구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본 주택의 당첨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2.1100A	052.5500B	058.6900A	058.4500B	합계	
약식표기		52A	52B	58A	58B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	3	1	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1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4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1	1	4
		경기도	3	1	3	1	8
		인천광역시	1	1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8	10	8	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4	1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14	23	14	74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12	15	12	54	
합계		63	42	63	42	2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11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제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80 1045 2128 1228">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그 세대원(부부 포함)이 각 신청 중복으로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단,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 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해당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등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할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이 있을 경우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단,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 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이 적용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30%** →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30%** →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 30% →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54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동일 순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5.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화성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화성시 거주기간 산정시 화성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공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의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2년 이상 ~ 3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3년 이상 ~ 4년 미만	5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5년 이상 ~ 6년 미만	7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5년 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①, ②의 처리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5.24(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일반공급	1순위	2021.05.25(화)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5.26(수)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06.01.(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바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6.14.(월)~2021.06.17.(목)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t-siglo.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01 (화) ~ 2021.06.10.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01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현재 화성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5.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구 분	선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 된 자는 향후 연락처 변경시 당사 견본주택에 유선으로(☎1600-0255)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정 예약 후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시 방문계약일 예약은 동안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홈페이지(www.dt-siglo.co.kr)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시 당첨자 본인 외 1인(가족 1인 / 신원확인서류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미제출 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 및 추정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6.02.(수) ~ 2021.06.08.(화) (7일간 10:00 ~17:00 까지)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1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함.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③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⑥-1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⑦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⑨ 복무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본인	•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지않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⑨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협약서	-	• 기준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④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⑧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	①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사실 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	⑥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당사 건분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2020. 05. 14 ~ 2021. 05. 14)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 06. 14(월) ~ 06. 17(목) 4일간, 10:00 ~ 17:00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다,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점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점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화성시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점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점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점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점이 취소된 자는 당점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점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점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 당점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 기타 무주택자 확인 서류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외 모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점 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799501-04-213413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 금융센터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601호 홍길동: 1020601홍길동)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납부 일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 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보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시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시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건설지역인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자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시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시정 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총 공급금액	계약금	1회차 중도금	2회차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22-06-15	2023-12-15	입주지정일
52A	3,100,000	310,000	310,000	310,000	2,170,000
52B	2,300,000	230,000	230,000	230,000	1,610,000
58A	3,900,000	390,000	390,000	390,000	2,730,000
58B	4,700,000	470,000	470,000	470,000	3,290,000

-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등급 또는 등급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799501-04-213442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 금융센터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오입금, 과오납등으로 인한 환불시 별도의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계약시	2022-06-15	2023-12-15	입주지정일
52A	선택1	3	안방, 거실, 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594,000	4,158,000
52B	선택1	3	안방, 거실, 침실1	5,940,000	594,000	594,000	594,000	4,158,000
58A	선택1	3	안방, 거실, 침실2	5,940,000	594,000	594,000	594,000	4,158,000
	선택2	4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820,000	682,000	682,000	682,000	4,774,000
58B	선택1	3	안방, 거실, 침실2	5,940,000	594,000	594,000	594,000	4,158,000
	선택2	4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820,000	682,000	682,000	682,000	4,774,000

※ 발코니 미확장시 구조상의 이유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선택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주택형	설치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비 고
				계약시	2022-06-15	2023-12-15	입주지정일	
에어브러쉬	전 타입 공통	현관	440,000	44,000	44,000	44,000	308,000	
현관복도장	52A	현관	1,100,000	110,000	110,000	110,000	770,000	
주방가구 도어 디자인 1 (주방 상,하부장+냉장고장)	전 타입 공통	주방	1,320,000	132,000	132,000	132,000	924,000	PC 마감
주방가구 도어 디자인 2 (주방 상,하부장+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전 타입 공통	주방	3,300,000	330,000	330,000	330,000	2,310,000	PC 마감
아일랜드장	전타입 공통	주방	1,650,000	165,000	165,000	165,000	1,155,000	PC 마감
주방 상판+벽(세라믹타일)	52A/52B	주방	3,520,000	352,000	352,000	352,000	2,464,000	
	58A/58B		3,740,000	374,000	374,000	374,000	2,618,000	
빌트인냉장고	전타입 공통	주방	3,850,000	385,000	385,000	385,000	2,695,000	삼성 비스포크
빌트인김치냉장고	전타입 공통	주방	2,200,000	220,000	220,000	220,000	1,540,000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3구)	전타입 공통	주방	880,000	88,000	88,000	88,000	616,000	
인덕션 (2구)+하이라이트(1구)			770,000	77,000	77,000	539,000		
알루미늄 슬라이딩도어	전타입 공통	드레스룸	660,000	66,000	66,000	66,000	462,000	
시스템 가구	52A	드레스룸	1,320,000	132,000	132,000	132,000	924,000	
	52B		1,540,000	154,000	154,000	1,078,000		
	58A/58B		1,430,000	143,000	143,000	1,001,000		
불박이장	전타입 공통	52 침실1/58 침실2	990,000	99,000	99,000	99,000	693,000	
수입타일	52A/52B	욕실1	1,760,000	176,000	176,000	176,000	1,232,000	
	58A/58B	욕실1,2	2,860,000	286,000	286,000	286,000	2,002,000	
젠다이 (엔지니어드 스톤)	52A/52B	욕실1	110,000	11,000	11,000	11,000	77,000	
	58A/58B	욕실1,2	220,000	22,000	22,000	22,000	154,000	
욕실 하부장	52A/52B	욕실1	550,000	55,000	55,000	55,000	385,000	
	58A/58B	욕실1,2	1,100,000	110,000	110,000	110,000	770,000	
스탠딩 세탁기	전타입 공통	세탁실	1,320,000	132,000	132,000	132,000	924,000	
스탠딩 건조기	전타입 공통	세탁실	1,650,000	165,000	165,000	165,000	1,155,000	
플리싱타일	52A/52B/58A/58B	거실, 주방, 복도	1,980,000	198,000	198,000	198,000	1,386,000	
	58A/58B	거실, 주방, 복도, 침실1	2,530,000	253,000	253,000	253,000	1,771,000	

※ 발코니 미확장시 구조상의 이유로 일부옵션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오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유/무상 적용은 당사의 마케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는 아파트 공급계약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급가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내용, 납부일정, 제품에 관한 기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확인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나 동질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

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옵션품목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플러스 옵션 선택 품목 납부계좌

- ※ 아래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국민은행	799501-04-213442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 [2021.06.14.(월)~2021.06.17.(목)]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 됨)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4)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거실, 침실1)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2개소)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확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장판> 침실, <타일> 발코니,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3)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4) 일반가구	신발장, 붙박이장, 기타수납장	
5)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TV,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7)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실 도어
8)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9)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m²,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52A	52B	58A	58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0,067,000	19,772,000	22,894,000	22,087,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 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IX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
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9.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1)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2)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1) 지역간 전입 : 모집공고 당일까지 화성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발생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 반드시 확인필요.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인터넷 접수가 아닌 특별공급시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해약 조치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급대금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공사시 마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손잡이 형태, 열림방향과 외장재 등은 제조사 및 외부입면 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 등)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재, 벽지류, 가구, 기기류 및 각종 제품 등은 본공사시 경쟁입찰을 통하여 동등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의 모습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 과정 중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방문,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함.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시공·설치되지 않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금이 부과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대금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함.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인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사업주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Project Financing 약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화성동탄2 C-2블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X 단지 여건사항

- ☐ **택지지구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화성동탄(2)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0호, 2019.07.01.)로 승인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6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른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초등학생은 늘봄초 및 다원초로 배치할 계획이고, 중학생은 동탄2-1중학교(동탄중, 청계중, 다원중, 한백중, 이산중, 동탄2중[2022.03.개교예정])에 배치할 계획임.
 - 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 설립예정 및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함. 다만, 화성시는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한편,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경요인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를 필요하며, 재협의 시 동 요건 및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북서측 약 350m 지점에 송전탑 및 송전 선로가 위치해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신도시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도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부지 주변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이 계획중에 있으므로 추후 사생활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경부고속도로, 영덕~오산간 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간 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공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신도시 내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포함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원청 등)이 존치예정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탄C 인근(폐1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탄2택지개발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발생지역이며, 지구내외 인접지역에 계획된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시설),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처리장), 변전소, 가압장, 배수지, 존치기업, 장사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각종 도시시설물, 특수학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고 계약(청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 시설물들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문제제기 등을 할 수 없음을 수인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지구 내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C 남측에 변전소, 북측에 케이블헤드, 오수중계펌프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등), 전기공급 설비 (변전소, 케이블헤드 등), 가스공급시설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사업주체에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않음.
- 화성동탄(2)신도시 서남측에 인접하여 동탄 일반산업단지(동탄일반산단, 동탄2일반산단, 동탄3일반산단, 장지도시첨단산단(가칭))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성동탄(2)지구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지구내 유헤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홍보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수변공원 및 공공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한전관로 이중화로 인하여 한전계폐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사업승인도서, 카달로그, 단지모형 상의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승인서의 동탄2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음.
- 동탄2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택지개발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동탄2지구 사업진행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및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동탄2지구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탄2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등은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동탄2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 및 인접도로 가속차로 확장협약에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최초 분양 시와 달리 준공 후 도로여건이 변하여 교통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변 도로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단지 주변으로 테크노밸리와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형성되어 있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소규모 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동탄대로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 본 단지 동측 약 900m 지점에 선남숲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 약 900m 지점에 치동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서측 약 200m 지점에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북서측 약 350m 지점에 송전탑 및 송전 선로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북동측 약 1,000m 지점에 늘봄초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약 250m 지점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 이외 본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군이 존재함에 따라 사전에 유의하시고,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부주의로 미확인 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내 지하주차장의 차로 너비는 6m이상이고, 지하2층 주차장(공동주택) 차로 높이는 2.7m이상 확보하여 택배차량 및 탑차가 이용할 수 있음.
- 지하3,4층(공동주택)의 차로 높이는 2.4m로 택배차량 및 탑차 접근이 불가함
- 전기자동차 이동형 콘센트는 주차단위구획의 4%이상 확보함.
- 공급되는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 mdf실, 방재실, 기계실이 공급되며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지상 놀이터, 지하 실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샤워실),회의실이 설치됨.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 단지외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음.
- PIT상부세대, 최상층 세대, 층간 세대평형이 상이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층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호실의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호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경사는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옥상에 설치되는 소화수조 및 기계설비로 인하여 하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음.
- 허가도서(단위세대전등, 전열배선도)의 단위세대 배선기기(스위치, outlet 등), 조명,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의 위치, 수량, 사양 등은 견본주택에 따르며,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수거차량 출입은 지상으로 접근이 가능함
- 주거동 일부 저층세대는 하부에 놀이터, 경로당이 설치되어, 이용자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상가 지붕에는 냉각탑 및 실외기 등이 설치됨.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주거환경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함.
- 판매시설 지붕에는 환기설비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시각적 간섭 등의 주거환경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사항을 확인해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공개공지는 외부인과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지로서 향후 이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구간 중 동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2개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단지내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브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와 공공조경은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에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단지내 설치로 인하여 인접한 일부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함.
- 단지내 경로당은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지붕 등의 공용구간은 입주자 개인이 점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에 의한 무단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주방환기의 즉배기 설치, 전열교환기 급배기구는 설비 및 하향식 피난구 간섭으로 입면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실외기 그릴창은 실외기의 환기 성능 확보를 위하여 사이즈가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근생)가 설치되며 소음 및 진동, 수증기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등의 옥상 파라펫은 특화설계적용 및 실외기설 설치에 의하여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은 지역난방이 공급됨.

- 단지 내부에 일부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간간이 설치 될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로 경사도는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주차면은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됨.
- 부대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인허가로 인해 외부 창호에 소방대 진입창이 표기 될 수 있음.

XI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오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카달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이미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건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드라이에어리어(D/A),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둘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개설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 위치, 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차별화 및 성능 개선,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의 반영으로 인하여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외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또는 온천공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상에 위치(3개소)하고 있으므로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개소 및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생활폐기물보관함, 주차장 등)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어려울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무인택배함 설치 위치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주동 1층 현관홀의 출입동선, 자동문의 위치, 경사로의 위치,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특화설계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식재, 도로포장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드라이에어리어(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옥탑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동·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리용 피뢰침이 시공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외벽 장식물, 옥외시설물 등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중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으며,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시설은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장비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최대용량, 운행속도, 탑승인원, 탑승 위치, 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음.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출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음.
- 주차장과 각 등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거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음.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각종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지상 PIT층은 지반현황 등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음.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수 있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일부 세대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환기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 부속실의 지상 급배기 환기휀의 위치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1층 판매시설 전면 조경 플랜터는 현장 여건에 맞게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에 노출된 D.A(환기구), 천창 등의 구조물은 이용자동선 및 환경권 향상을 위해 분산배치하여 위치, 개소, 형태, 크기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차구획의 이동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디자인 변경이 될 수 있음.
- 건축물의 기초 및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 및 저층부 상가 캐노피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냉난방기는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본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피난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의 수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됨.
- 세대 싱크대 주방가구 상판은 상판 자체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석재류 또는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본 공사 시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기 배선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관련 마감재의 제품사양, 위치, 수량 및 설비 수전 및 배수구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급수, 급탕, 난방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됨.
- 세대 환기설비는 다용도실 상부에 설치되며 환기용 배관이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상부에 노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세대 환기설비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공사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됨.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와 외장재 등은 제조사 및 외부입면 계획 등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등급 또는 등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욕실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 들 수 있음.
- 인접세대의 발코니 확장 선택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피트내 난방관련배관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공사시 업체,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가구류(침대, 소파 등), 생활 가전류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는 별도의 하향식피난기구(일부세대 대피공간계획)가 설치되어져 있음.
- 본 공사 시 부대복리시설의 동선 및 기능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내·외부 디자인과 규모, 구조,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디자인 및 세대내 개방감을 위해 유리난간이 설치됨으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함.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
-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급수, 급탕 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세대에 완강기가 설치 될 수 있고 비상 시 개폐가 가능한 실외기 루버 설치될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외부 창호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창호와 다를 수 있음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건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동등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 시 건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위생도기,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임.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건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소파, 커튼, 거실장, 거실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됨.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재판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XI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계획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계획
	방습층 설치 (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계획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 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바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 설비를 설치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 등에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h3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h3>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green;">녹색건축 예비 인증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td> <td>인증번호 : G-SEED-P-2021-0260-7</td> </tr> <tr> <td>건축주 : ㈜하이아트</td> <td>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 </tr> <tr> <td>인증(예행)일 : 2024년 10월 19일</td> <td>유효기간 : 2021.3.22. ~ 사용승인일</td> </tr> <tr> <td>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td> <td></td> </tr> <tr> <td>층 수 : 지하 4층, 지상 38층 / 380세대</td> <td></td> </tr> <tr> <td>면적 : 70,907.810 m²</td> <td></td> </tr> <tr> <td>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td> <td></td> </tr> <tr> <td>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증 등급 :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본이별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토지이용 및 교통</td> <td>19%</td> </tr> <tr> <td>에너지 및 환경오염</td> <td>53%</td> </tr> <tr> <td>재료 및 자원</td> <td>55%</td> </tr> <tr> <td>물순환관리</td> <td>63%</td> </tr> <tr> <td>유지관리</td> <td>88%</td> </tr> <tr> <td>생태환경</td> <td>10%</td> </tr> <tr> <td>실내환경</td> <td>65%</td> </tr> </table> </div> <div style="width: 45%;"> <p>2021년 3월 22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div> </div>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1-0260-7	건축주 : ㈜하이아트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예행)일 : 2024년 10월 19일	유효기간 : 2021.3.22. ~ 사용승인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		층 수 : 지하 4층, 지상 38층 / 380세대		면적 : 70,907.810 m ²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 및 교통	19%	에너지 및 환경오염	53%	재료 및 자원	55%	물순환관리	63%	유지관리	88%	생태환경	10%	실내환경	65%	<h3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명: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 신청자: ㈜하이아트 대기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 성능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가. 소음 관련 등급</th> <th colspan="2">다. 환경 관련 등급</th> </tr> <tr> <td>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d>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광양층계층 차단성능</td> <td>★★★★</td> <td>20. 열차단 보온성능</td> <td>★★★★</td> </tr> <tr> <td>2. 광양층계층 차단성능</td> <td>★★★★</td> <td>21. 자연채광 확보성능</td> <td>★</td> </tr> <tr> <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 <td>★★★★</td> <td>22. 생태연속성</td> <td>★</td> </tr> <tr> <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 <td>★</td> <td>23. 비오름 조성</td> <td>해당없음</td> </tr> <tr> <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 <td>★★</td> <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방출 배류의 적용</td> <td>★★★★</td> </tr> <tr> <td></td> <td></td> <td>25. 자연 환기장치 적용 여부</td> <td>해당없음</td> </tr> <tr> <td></td> <td></td> <td>26. 담배연기 환기장치 설치 수준</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나. 구조 관련 등급</th> <th colspan="2">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th> </tr> <tr> <td>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d>성능항목</td> <td>성능등급</td> </tr> <tr> <td>1. 내구성</td> <td>★★★</td> <td>1. 단차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td> <td>해당없음</td> </tr> <tr> <td>2. 가변성</td> <td>★★★★</td>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td> <td>★</td> <td>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용성</td> <td>★</td> </tr> <tr> <td>4. 수리용이성 공통부분</td> <td>★★</td> <td>4. 생활권내의 일일 집결성</td> <td>★</td> </tr> <tr> <td></td> <td></td> <td>5. 생활권의 공공관리 계획</td> <td>★★★★</td> </tr> <tr> <td></td> <td></td> <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td> <td></td> <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td> <td></td>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td> <td></td> <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td> <td></td> <td>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td> <td></td>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td> <td></td> <td>12. 세대 내 물로 확보율</td> <td>★</td> </tr> <tr> <td></td> <td></td> <td>13. 총대면적 중 청정시스템</td> <td>★★★★</td> </tr> <tr> <td></td> <td></td> <td>14. 탈염안정 콘텐츠</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3월 22일</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div>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양층계층 차단성능	★★★★	20. 열차단 보온성능	★★★★	2. 광양층계층 차단성능	★★★★	21. 자연채광 확보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연속성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름 조성	해당없음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방출 배류의 적용	★★★★			25. 자연 환기장치 적용 여부	해당없음			26. 담배연기 환기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차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가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용성	★	4. 수리용이성 공통부분	★★	4. 생활권내의 일일 집결성	★			5. 생활권의 공공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물로 확보율	★			13. 총대면적 중 청정시스템	★★★★			14. 탈염안정 콘텐츠	★★★★	<h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p>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건축물 개요</th> <th colspan="2">인증 개요</th> </tr> <tr> <td>인증번호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주거)</td> <td>인증번호 : 21-주-에-11-0178</td> <td>평가자 : 박한결</td> <td></td> </tr> <tr> <td>인증연도 : 2024.10.19</td> <td></td> <td>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td> <td></td> </tr> <tr> <td>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td> <td></td> <td>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td> <td></td> </tr> <tr> <td>층 수 : 지하 4층 / 지상 38층</td> <td></td> <td>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td> <td></td> </tr> <tr> <td>연면적 : 50355.69(m²)</td> <td></td> <td></td> <td></td> </tr> <tr> <td>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td> <td></td> <td></td> <td></td> </tr> <tr> <td>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td> <td></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인증 등급 : 1+등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width: 45%;"> <p>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p> <p>에너지소비량: 77.1</p> </div> <div style="width: 45%;"> <p>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p> <p>CO₂ 배출량: 22.3</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5">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th> </tr>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th> <th>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th> </tr> <tr> <td>난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냉방</td> <td>39.3</td> <td>56.5</td> <td>44.3</td> <td>9.7</td> </tr> <tr> <td>공명</td> <td>30.7</td> <td>42.9</td> <td>32.6</td> <td>7.2</td> </tr> <tr> <td>조명</td> <td>7.1</td> <td>7.1</td> <td>19.6</td> <td>3.3</td> </tr> <tr> <td>합계</td> <td>-</td> <td>4.5</td> <td>12.3</td> <td>2.1</td> </tr> <tr> <td>합계</td> <td>77.1</td> <td>111.0</td> <td>108.8</td> <td>22.3</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난방, 냉방, 조명, 조리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차이,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1설치형 [V]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환경 부처 분담금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등에 따라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료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 등급을 부여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한국부동산원</p> </div>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3월 19일</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인증번호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 21-주-에-11-0178	평가자 : 박한결		인증연도 : 2024.10.1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층 수 : 지하 4층 / 지상 38층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		연면적 : 50355.69(m ²)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난방	0.0	0.0	0.0	0.0	냉방	39.3	56.5	44.3	9.7	공명	30.7	42.9	32.6	7.2	조명	7.1	7.1	19.6	3.3	합계	-	4.5	12.3	2.1	합계	77.1	111.0	108.8	22.3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1-0260-7																																																																																																																																																																																																													
건축주 : ㈜하이아트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인증(예행)일 : 2024년 10월 19일	유효기간 : 2021.3.22. ~ 사용승인일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																																																																																																																																																																																																														
층 수 : 지하 4층, 지상 38층 / 380세대																																																																																																																																																																																																														
면적 : 70,907.810 m ²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토지이용 및 교통	19%																																																																																																																																																																																																													
에너지 및 환경오염	53%																																																																																																																																																																																																													
재료 및 자원	55%																																																																																																																																																																																																													
물순환관리	63%																																																																																																																																																																																																													
유지관리	88%																																																																																																																																																																																																													
생태환경	10%																																																																																																																																																																																																													
실내환경	65%																																																																																																																																																																																																													
가. 소음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양층계층 차단성능	★★★★	20. 열차단 보온성능	★★★★																																																																																																																																																																																																											
2. 광양층계층 차단성능	★★★★	21. 자연채광 확보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연속성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비오름 조성	해당없음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제방출 배류의 적용	★★★★																																																																																																																																																																																																											
		25. 자연 환기장치 적용 여부	해당없음																																																																																																																																																																																																											
		26. 담배연기 환기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차내·외 보행자 친화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가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3. 차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용성	★																																																																																																																																																																																																											
4. 수리용이성 공통부분	★★	4. 생활권내의 일일 집결성	★																																																																																																																																																																																																											
		5. 생활권의 공공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물로 확보율	★																																																																																																																																																																																																											
		13. 총대면적 중 청정시스템	★★★★																																																																																																																																																																																																											
		14. 탈염안정 콘텐츠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인증번호 : 동탄2 주상복합 C2B1 신축공사(주거)	인증번호 : 21-주-에-11-0178	평가자 : 박한결																																																																																																																																																																																																												
인증연도 : 2024.10.19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1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층 수 : 지하 4층 / 지상 38층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																																																																																																																																																																																																												
연면적 : 50355.69(m ²)																																																																																																																																																																																																														
건축물의 주변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m ² -년)																																																																																																																																																																																																										
난방	0.0	0.0	0.0	0.0																																																																																																																																																																																																										
냉방	39.3	56.5	44.3	9.7																																																																																																																																																																																																										
공명	30.7	42.9	32.6	7.2																																																																																																																																																																																																										
조명	7.1	7.1	19.6	3.3																																																																																																																																																																																																										
합계	-	4.5	12.3	2.1																																																																																																																																																																																																										
합계	77.1	111.0	108.8	22.3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항목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구분	등급기준	AA등급		비고																																	
			설치항목(1)	설치항목(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인증번호</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제 2021-101-024 호</td> </tr> <tr> <td colspan="3">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이름</td> <td>(주)하이아트</td> </tr> <tr> <td></td> <td>주소</td> <td>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카이낸스프라자 (상실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td> <td>이름</td> <td>동탄2 수상복합 C2BL 신축공사 (동탄2신도시 금강랜드리움 5차 신축공사)</td> </tr> <tr> <td></td> <td>주소</td> <td>경기도 화성시 영선동 99-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증내용</td> <td>구분</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td> </tr> <tr> <td></td> <td>초고속정보통신건물</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td> </tr> <tr> <td></td> <td>홈네트워크건물</td> <td><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p>2021년 04월 12일</p> <p>서울전과관리소장 </p> </td> </tr> </table>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1-101-024 호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신청인	이름	(주)하이아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카이낸스프라자 (상실물)	건축물	이름	동탄2 수상복합 C2BL 신축공사 (동탄2신도시 금강랜드리움 5차 신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선동 99-8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p>2021년 04월 12일</p> <p>서울전과관리소장 </p>			항목	1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윌패드 간 Cat 5e 4페어 이상	차량통제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21-101-024 호																																			
	<p>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신청인	이름	(주)하이아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카이낸스프라자 (상실물)																																			
	건축물	이름	동탄2 수상복합 C2BL 신축공사 (동탄2신도시 금강랜드리움 5차 신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영선동 99-8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p>2021년 04월 12일</p> <p>서울전과관리소장 </p>																																					
			2	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윌패드 간 16C 이상	전자경비시스템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2㎡)	무인택배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욕실폰																																		
		5	단지서버실	주방TV																																		
		6	폐쇄회로TV장치	일괄소등스위치																																		
		7	가스밸브제어기	디지털도어락																																		
		8	조명제어기	엘리베이터 호출 연동제어																																		
		9	난방제어기	주차위치인식시스템																																		
		10	현관방범감지기	현관도어카메라																																		
		11	주동현관통제기	예비전원장치																																		
		12	원격검침전송장치	대기전력차단장치																																		
		13		환기장치 제어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갑인엔지니어링	(주)신화에프이원	
감리금액	1,506,340,000	498,672,170	134,750,000	150,15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96,593,700,000원	01282021-101-00052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 호	(주) 하이아트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비1층 1호(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등록번호	110111-3687253
		(주)금강주택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역삼동, 금강빌딩)
		110111-0313314

- **건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2620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건본주택
- **사이버 건본주택** : www.dt-siglo.co.kr
- **분양문의** : 1600-0255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